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64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남인순 · 오세희 · 용혜인  
서영석 · 허종식 · 박 정  
이수진 · 김남희 · 송재봉  
손명수 · 전용기 · 김 윤  
이해식 · 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국가시험)”을 “(국가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의3(국가시험) ① ~ ③<br>(생략)<br><u>&lt;신설&gt;</u><br><br><br><br><br><br><br><br><br><br><u>&lt;신설&gt;</u> | 제12조의3(국가시험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br><u>④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u><br><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u><br><u>⑥ (현행 제4항과 같음)</u> |
| ④ (생략)                                                                                                   |                                                                                                                                                                                                                                                                                                     |